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6. 8 선고 2019가단2240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4. 20.

판 결 선 고 2021. 6. 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기재 주식(이하 “이 사건 주식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8. 1. 5.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.

이 사건 소는, 원고가 C에 대한 전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가 2018. 1. 5.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계약의 취소 및 위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전된 주식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다.

그런데 기록에 의하면, 피고가 2020. 6. 11.경 C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소는 그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,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83261 판결 등 참조). 한편,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 위와 같이 C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였더라도, 이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부합하는 것이므로,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85157 판결,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이경호

별지.

발행회사 : 주식회사

주식의 종목 : 보통주

수량 : 2,000 주

1 주의 액면금 : 10,000 원. 끝.